

호우·태풍에 의한 재해유형



홍수·침수



유해·위험요인

- 배수로 정비 미비로 인한 건물 및 지하구조물 침수
- 집중호우·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및 휨살림

예방대책

- 배수로 및 물막이판 등 정비 실시
- 호우·태풍 등 악천후 예상 시 사전 근로자 대피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, 위험작업 중지조치



감전



유해·위험요인
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·기구 취급으로 인한 감전
- 태풍으로 무너진 전주, 전선 등에 의한 감전

예방대책

- 전기기계·기구의 절연 및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
-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실시



붕괴·매몰



유해·위험요인

- 토사유실 또는 지반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무너짐
-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 붕괴

예방대책

- 사면 덮개설치 등 사전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
-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주기적 계측 실시
- 산불 피해지역 등 산사태 우려 인근 사업장은 대피요령 숙지

호우·태풍 시 안전점검

✓ 체크리스트

- ☐ 집중호우, 태풍 등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?
- ☐ 호우·태풍 시 재난 위험장소(토사유실, 지반약화, 산사태 우려 등)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?
- ☐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 등은 없는가?
- ☐ 호우 시 침수 위험은 없는가? (배수구 점검 실시)
- ☐ 침수 시 전기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?
- ☐ 침수 시 오물 유입 등 위생상 문제되는 곳은 없는가?
- ☐ 침수 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?
- ☐ 정전 대비 비상구호 용품(손전등, 양초 등)이 구비되었는가?
- ☐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복구반을 구성·운영하고 있는가?
- ☐ 도급·수급 사업장이 합동 점검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논의하였는가?
- ☐ 자연재난(산사태 포함)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?
- ☐ 호우·태풍 발생 후 복구 시 조치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가?

대응요령



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,

즉시 작업중지하고 대피



호우·태풍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



사업장 위험상황신고 1588-3088

호우·태풍 시 단계별·유형별 안전관리 이행수칙



주의보	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	호우·태풍 예비특보 발령지역	재택·유연근무·휴가 적극 활용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2)703-0110~0113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)205-1541~3 재난신고 119, 범죄신고 112, 민원상담 110
경보	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	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	즉시 작업중지 하고 근로자 대피	

재난 단계별

인력 단계별

호우·태풍 발생 전

- 사전 사업장 내 위험장소 확인 및 위험성평가 실시
-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수립 (상황전파, 근로자 대피 등)
- 주요 유관기관 연락망 구축(병원, 소방, 경찰 등)
- 사업장 소재 지역의 태풍 복상시기 및 호우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
- 산불 등에 따른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사전 대비태세 유지 (비탈면 유실 여부 등 점검,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등)

건설업

- 현장주변 취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
-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
- 굴착사면 등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·장비 확보 후 비치
- 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상태 등 사전 안전점검 실시



호우·태풍 발생 시

- 기상청 특보 수시 확인 등 기상 변화 주시
- 특보 발령 등 기상악화 시 재택·유연근무 및 휴가 권고
- 집중호우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
- 유리창, 가설구조물 인근 등 낙하물 우려장소 접근통제
- 산사태, 토석류 발생 우려 시 근로자 대피 (사업장 인근 지정 대피소 사전 확인)



건설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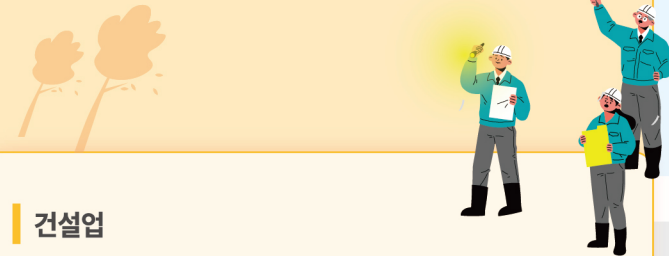
- 강풍·강우 시 철골 조립, 타워크레인 인상,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
- 굴착부, 맨홀 등 침수 우려 장소에 대한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·기구, 전선 등 접촉금지
- 지하층 등 침수된 장소의 출입통제(감전, 질식위험)

호우·태풍 발생 이후

- 침수된 건물, 공장 등 설비 재가동 전 안전점검 실시
- 복구작업 시 안전보건수칙 준수 및 개인보호구 착용
- 사업장 주변 공용 시설물의 파손, 지반 침하 및 산사태 위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



건설업

- 현장 침수 후 복구 작업 재투입 시 사전 감전위험요소 (분전함 등) 확인
- 주요 가설구조물(동바리, 비계, 흙막이지보공) 및 장비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인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침수 등 손상된 기계·설비 등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실시
- 수해복구 등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, 안전난간 설치, 개인보호구 착용